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및 집행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○ 관련 법령

- *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
- *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2, 제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, 제6조의 3
- *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
- *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5조

◆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, 기금회계

◆ 대상사업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	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'23~'27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
	성별영향평가사업	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상사업
권장	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	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등

◆ 제외대상 :

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, 예비비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평등목표(성과목표)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성인지 예산서 성격 :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(예산서 부속서류)